



# IV 대학생활

- 학생준수규정
- 장학금 지급규정
- 교내 · 외 장학금 제도 및 학자금 융자
-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 병사 · 예비군 · 민방위
- 주요 학생자치단체
- 동아리 활동
- 채플과섬김 · 신양생활
- 도서관 이용
- 백석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 백석대학교 포털사이트 이용
- 사이버캠퍼스 이용안내
- 취업진로지원처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백석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생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 대학의 재학생으로 한다.

## 제2장 학생증

**제3조(교부)** 입학절차를 완료한 학생은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휴대)** ①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본 대학 교직원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학생에게는 수강, 시험응시, 학술정보관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변조 및 대여금지)** 학생은 학생증을 변조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6조(재발급)**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재발급 신청서를 교내주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3장 학생자치단체 등록 및 해산

**제7조(등록)** ① 학생자치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설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열거한 단체에 한한다.

1.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동아리연합회(개별동아리 포함), 각 학부(과)학생회
  2. 순수한 학술연구활동, 교내·외 봉사활동, 기타 학습 및 친목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②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서에 대표자 연서를 한 후 지도교수의 취임승인서를 첨부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단체등록 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단체의 등록서류(소정양식) 1부
3. 단체의 규약 또는 회칙 1부
4. 단체 구성원의 명단 1부

**제8조(활동기간)** ① 등록된 단체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학년 초 소정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단체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단체의 규약, 회칙 등 이미 제출된 서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서류를 7일 이내에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보고서 제출)** ① 단체의 활동을 비롯한 학생의 모든 과외활동은 본 대학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각 단체의 장은 학년초 학기의 활동계획서 및 전년도 활동결과보고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활동제한 및 해산)** ① 단체는 매 학기 수시고사 및 학기말고사의 7일 전부터 종료 시까지에는 그 활동을 자제하여야 한다.

② 단체의 활동이 본 대학의 교육목적에 반하고 기능을 해(害)하고 교내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단체가 그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 때에는 학생복지·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단체를 해산할 수 있다.

④ 학생은 무단집회, 성토, 농성, 등교 거부, 고성방가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단체장 자격)** ① 총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학교가 인정한 교단에서 세례를 받은 자
2. 교내·외에서 법에 의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3학년 재학생으로서 본 대학에서 4학기를 이수하고 5학기 등록을 마친 자, 또는 5학기를 이수하고, 6학기 등록을 마친 자, 다만 재선거 시에는 6학기 또는 7학기까지 등록을 필한 자,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총학생회장, 부회장의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
4.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이고, 전체 등록학기 평균평점 2.5 이상인 자
5. 교목실장 또는 학부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6. 학부장 및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7. 후보자 정·부 각각 재학생 5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8. 총학생회장이나 부회장에 출마한 경력이 없는 자
  - ② 학부(과) 학생회장은 「학부(과) 학생회장 선거 시행 세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③ 각 단체의 장이 재임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단체장 인준)** ① 학생자치단체장, 단체의 간부 등으로 당선 또는 선임된 자는 총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총장은 단체의 구성 또는 활동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체장, 간부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改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선거관리경비)** 단체장의 선거관리경비는 학생자치활동 경비 이외의 경비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4장 학생집회, 간행물, 광고물

**제14조(집회 등 신고)** ① 학생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집회
  2. 간행물 발간 및 배포
  3. 교내·외 광고물 부착
  4. 과외활동에 있어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 ② 전항 제1호의 교내·외 집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회 7일 전에 집회목적, 일시, 장소, 대상인원 등을 명기한 집회신청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학생처장은 교내·외 집회가 수업에의 지장 유무는 교무처장에게, 장소(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는 총무처장에게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제15조(간행물 발간)** 학생이 정기·부정기 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학부장 및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동아리인 경우)의 승인을 받아 제14조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간행물 배포)** 학생이 간행물을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배포의 목적, 일시, 장소, 배포대상 등을 기재하고 간행물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광고물 부착)** ①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교내·외에 광고물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의한 신청서 제출 시 원안에 검인을 받고 게시장소와 기간을 지정 받은 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5장 운동경기, 경비

**제18조(운동경기 참가)** ①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로 교외의 운동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은 시험기간 중 교외의 운동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국제운동경기 또는 전국규모대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학생이 교외단체소속 운동선수로 교외경기에 출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경비지출)** ① 단체의 활동경비는 학교회계의 경비지출규정 및 절차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단체의 경비 신청 시에는 단체의 행사내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학생처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 제6장 상 벌

**제20조(포상)** ① 학생이 교내·외에서 선행을 하였을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 상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학칙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기소중지 또는 기소 유예된 증거가 확실한 경우
3. 학칙 및 제 규정에 의한 학생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교내에서 음주, 금지구역에서의 흡연, 집단행동 등의 행위로 면학분위기를 저해한 경우, 또는 통학버스에 음주 승차한 경우
5. 본 대학이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6.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시설 또는 교구를 파손하거나 외부에 반출한 경우



8.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경우
9. 본 대학의 시설물을 무단점거 · 훼손하거나 허락없이 사용 · 대여 · 개조한 자 또는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자
10. 교내에서 반사회적인 신앙운동을 행하는 자. 다만, 반사회적 신앙운동의 기준은 한국교회와 이단연구 단체의 보편적 판단에 따른다.
11. 기타 학생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자  
② 학생 상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7장 예의 및 복장

**제22조(예의)** 학생은 교내 · 외를 불문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

**제23조(복장)** 학생은 학생신분에 맞는 검소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학생 준칙]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학생 준칙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IV

대학생활



## 장학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백석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이라 한다)의 설립정신에 입각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사무 관장)**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업무는 학생처장이 관장한다.

**제4조(장학위원회의 구성)** 장학위원회의 구성은 장학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 1.1.〉
- ② 삭제 <2021.1.1.>
- ③ 삭제 <2021.1.1.>
- ④ 삭제 <2021.1.1.>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 지급의 기본 방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 요건, 수혜 기간, 지급 기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각 학부에서 추천된 지급 대상자의 자격 요건 심사
4.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 등 부수적인 사항

**제6조(장학금 지급 대상)**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가정 형편이 곤란하여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2.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다만, 신입생 중 입학 성적이 우수한 자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3.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임직원 배우자 및 교직원의 직계비속
4.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5. 총학생회 및 학생 자치 기구에서 봉사를 통해 학생활동에 기여하는 자
6. 학술, 체육, 사회봉사, 학생자치활동 등의 활동으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
7.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교내 장학금)** 교내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급 기준은 「장학금 지급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1.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2. 백석복지 장학금
3. 보훈 장학금
4. 공로 장학금
5. 군종사관 장학금
6. 국가고시 장학금
7. 소망 장학금
8. CCG 장학금
9. 백석대학 합창단 장학금
10. 백석 글로벌 인재 장학금
  - 가. 백석 글로벌 인재 장학금(수시 성적우수)
  - 나. 백석 글로벌 인재 장학금(정시 성적우수)
11. 백석 인재 양성 장학금
  - 가. 백석 인재 양성 장학금(신입생)
  - 나. 백석 인재 양성 장학금(재학생)
12. 외국인 학생 장학금
13. 해외 복수학위 장학금
14. 특기자 장학금
  - 가. 체육특기자
15. 학군단 장학금
16. 지역인재 장학금
17. 자매결연 장학금
18. 사회기여 장학금
19. 편입학 장학금

IV

대학생활

**제8조(교외 장학금)** ① 교외 장학금은 교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사회단체, 외부기업체 및 개인이 후원하는 것으로 한다.

- ②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II 유형, 성적우수 국가장학금, 국가근로 장학금 등]의 경우 해당 장학생 선발은 교육부(한국장학재단)의 업무 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 ③ 외부 기탁 장학금의 출연자가 특정인 또는 특정 학부(과), 인원을 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연자 또는 기부자의 요구 조건에 의한다.
- ④ 기타의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지급 기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학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장학금 지급 신청)** ①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초 또는 학기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를 학부장을 경유하여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성적우수 장학생은 예외로 한다.  
② 보훈 장학금 신청자는 최초 신청 시 등록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적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인원 배정)** 해당 학기 장학생 선발 기준인 재학생수 산정은 직전 학기 교육부에 보고한 자료에 의한다.

**제12조(신청 자격 제한)** 본 대학교 재학생에 한하여 정규학기인 8학기까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내역은 「장학금 지급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 신청 자격이 상실된다.

1. 학칙 및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휴학자. 다만, 학비 감면의 경우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는 예외로 한다.
3. 등록 기간 내 등록을 필하지 못한 자
4. 장학금 신청 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자
5. 성적이 미달된 자
6. 기타 장학금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자

**제14조(동점자 처리)**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에 있어 평균 평점이 동점자인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15조(장학금 금액)** 교내 · 교외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입학금 포함)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가근로 장학금, 학업 장려금, 기숙사비(식대 포함), 교외 장학금 중 기부자의 요구 조건에 따라 생활비 명목의 지원금, 해외교류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장학금 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당해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하여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게는 본인 계좌로 지급(입금)하되, 당해 학기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원금 상환 처리를 우선으로 한다.



**제17조(장학생 교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의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교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이 승인한 바에 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장학금 지급규칙]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장학금 지급규칙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V

—  
대  
학  
생  
활



## 교내·외 장학금 제도 및 학자금 응자

### ■ 교내장학금 안내

#### 가.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선발기준 : 직전학기 신청학점을 전부 취득한 자로서 성적이 평점 3.0 이상이며 15학점 이상(4학년은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수강 신청과목 철회가 없어야 함.

구 분	인원	금액	비 고
수석	학부 학년별 성적최우수자	등록금 전액	
성적우수A	전공 학년별 상위 2% 이내	등록금 60%	
성적우수B	전공 학년별 상위 5% 이내	등록금 40%	
성적우수C	전공 학년별 상위 10% 이내	등록금 30%	
성적우수D	전공 학년별 상위 20% 이내	등록금 20%	

1) 성적장학생 선발 시 동점자 처리기준 : 교무규칙 제35조 제2항에 의거

- 취득 학점 수가 많은 자
- 취득 과목 수가 많은 자
- 전 학년 취득 학점 수가 많은 자
- 전 학년 평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함.

2) 유의사항

성적장학금은 신청이 필요 없으며 성적 석차순에 의하여 지급됨.

F학점, 수강철회자는 성적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 나. 백석복지장학금

- 1) 선발기준 : 학교법인 백석대학교(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 포함) 임직원 및 교직원 (연봉제교원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 3) 금 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 매학기 자동 선발함(단, 복학 시에는 학생처로 통보해야 함)



#### 다. 보훈장학금

- 1) 선발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3) 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 ※ 매학기 자동 선발함(단, 복학 시에는 학생처로 통보해야 함)
  - ※ 재학 중 신규 신청자는 학생처로 직접 방문(구비서류 : 대학수업료 등 면제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라. 국가고시장학금

- 1) 대상 : 국가고시 5급 이상의 각종 고시(사법, 행정, 외무, 기술,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에 1차 또는 최종 합격한 자.
- 2) 선발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 국가고시A : 최종 시험에 합격한 자
  - 국가고시B :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3) 지급액 :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적용하며 지급액은 별정금액으로 정한다.

#### 마. 공로장학금

- 1) 선발기준 : 국가, 사회 및 학교발전 · 홍보에 공로가 있는 자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자, 추천 시 장학위원회에서 정함.
- 2) 금액 : 별도로 정함.

IV

대학생활

#### 바. 군종사관장학금

- 1) 선발기준 : 군종사관후보생에 선발된 자에게는 선발된 학기부터 졸업 시까지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
-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3) 금액 :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입학금 제외함)
  - 단, 재학 중, 군종사관후보생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기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사. 백석대학합창단장학금

- 1) 선발기준 : 소정의 오디션에 합격하며 백석합창단원으로 활동하는 자.
  - 단, 백석합창단의 자격 상실 시 장학혜택에서 제외됨.

- 2) 성적기준 : (2014년 이후 장학생) 직전학기 2.5 이상  
(2013년 이전 장학생) 직전학기 3.0 이상

3) 금액 : 50만원

#### 아. 백석글로벌인재장학금

- 1) 선발기준 : 신입생 성적우수자 중 백석글로벌인재장학금(수시성적우수), 백석글로벌인재장학금(정시성적우수) 지급제도에 의해 선발된 자
  -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4.0 이상
  - 3) 금액 : 등록금 전액 등

### 자. 백석인재양성장학금

세부명칭	수혜자격	지급기준액 범위
백석인재양성장학금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2개 영역의 수능성적이 2등급 이내인 자로서 입학 후 면접·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단,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내에서 선발하며, 재학 중에는 매학기 평균평점 A(4.0) 이상 취득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간 등록금 전액</li> <li>○ 본교 기숙사비 제공</li> </ul>
백석인재양성장학금 (재학생)	TOEIC 900점 이상, 4학기 이내 등록, 매학기 평균평점 A(4.0) 이상인 자 중 별도의 선발전형에 합격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학기당 장학금 100만원 지급 (등록금 범위 내)</li> <li>○ 본교 기숙사비 제공</li> </ul>

## 차. 외국인학생장학금

- 1)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자 중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자

가) 성적기준 및 지급액

  - (신입생) 입학 시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50%
  - (Global Christian Leaders 인재 양성프로그램)
    - 입학 시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100% 기숙사비, 생활비 지급
    - 단, 재학 중 해당부서의 요구 시 정규학기 기간 내 동일하게 장학금 지급
    - 〈신설 2019.2.7.〉
  - (재학생) TOPIK 3급 이상 : 등록금의 30%
    - TOPIK 4급 이상 : 등록금의 40%
    - TOPIK 5급 이상 : 등록금의 45%
    - TOPIK 6급 이상 : 등록금의 50%
  - 단, 재학생은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 유지되어야 함  
(Global Christian Leaders 대상자 제외)



- (편입생) 4학년 편입자는 입학금만 100% 지급<2020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단, 2,3학년 편입자는 신입생 및 재학생 기준에 따라 지급
- 2)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자, 재외국민 및 국적이 외국인인 자
  - 가)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
  - 나) 지급액 : 학기별 등록금의 30% 및 희망시 기숙사 우선배정
- 3) 북한이탈주민
  - 가)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
  - 나) 지급액 : 학기별 등록금의 50% 및 기숙사 우선배정

#### **카. 해외복수학위장학금**

- 1) 선발기준 : 해외 복수학위 이수중인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 3) 금 액 : 본교 등록금 전액(복수학위 이수기간 동안)

#### **타. 특기자장학금**

- 1) 선발기준 : 체육특기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발기준 중 세부사항은 관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3) 금 액 : 일정액

#### **파. 학군단장학금**

- 1) 선발기준 : 학군단(ROTC)학생 중 가계가 곤란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자
-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 3) 금 액 : 일정액

#### **하. 지역인재장학금**

- 1) 선발기준 : 수시모집 지역인재 특별전형 지원자로서 최종 등록한 자
- 2) 금 액 : 입학금 면제

#### **갸. 자매결연장학금**

- 1) 선발기준 : 수시 또는 정시모집에 지원한 자매결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학교에 최초 합격한 자 중 출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 2) 금액 : 70만원

#### 나. 사회기여장학금

- 1) 선발기준 : 교정보호분야 종사자 본인 또는 자녀로서 경찰학부 범죄교정학을 전공하는 자
-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3) 금액 :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50%

#### 다. 편입학장학금

- 1) 선발기준 : 백석문화대, 백석예술대, 자매결연협약을 맺은 대학의 졸업(예정)자인 최종등록자
- 2) 금액 : 입학금 면제

#### 라. 소망장학금

- 1) 선발기준 : 국가, 사회 대학발전 · 홍보를 위해 공헌한 자(본인, 배우자, 자녀) 또는 특별히 가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 2) 금액 : 일정액

#### 마. CCG 장학금

- 1) 선발기준 : 이하 각 장학금 선발기준에 따름
- 2) 성적기준 : 이하 각 장학금 성적기준에 따름
- 3) 금액 : 이하 각 장학금액



## ■ CCG란?

기독교적 인성(Christian humanism), 수요자 중심(Customer-centered), 세계화(Globalization)

### 가. CCG/선교장학금

- 1) 선발기준 : 학원복음회를 위하여 활동하는 학생으로 담임목사 또는 학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 3) 금액 : 50만원

### 나. CCG/리더십장학금

- 1) 선발기준 : 학생회 임원으로 봉사하며 리더십이 우수한 학생
-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 3) 금액 : 일정액  
※ 매학기 자동 선발함.

### 다. CCG/인성장학금

- 1) 선발기준 : 직전학기 학교 주관 인성프로그램(모교방문, 클린문화, 노커닝, 독거노인방문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학부 학생회의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함  
※ 학부 학생회에서 확인서를 발급함
-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 3) 금액 : 1인당 50만원

### 라. CCG/사랑장학금

- 1) 선발기준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장애학생 본인(중증)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으로 부모가 장애인(중증)인 가정의 비장애학생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장애학생 도우미(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확인한 자에 한함)
- 2) 금액
  - 장애학생 본인 : 등록금의 50%
  - 부모가 장애인(중증)인 가정의 비장애학생 : 70만원

IV

대학생활

- 장애학생 도우미(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확인된 자에 한함) : 50만원

### 마. CCG/목회자장학금

#### 1) 선발기준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으로 본교 교단 및 타 교단 교회에서 시무중인 목회자(목사) 본인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으로 본교 교단 교회에서 시무중인 목회자(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2) 금액

- 본교 교단 목회자(목사) 본인 : 120만원
- 타 교단 목회자(목사) 본인 : 80만원
- 본교 교단 교회에서 시무중인 목회자(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70만원

### 바. CCG/사회봉사장학금

- 1) 선발기준 :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사회봉사센터의 추천을 받은 자  
(사회봉사센터 사회봉사장학금 운영규칙에 의함)
-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 3) 금액 : 일정액

### 사. CCG/면학장학금

면학	면학 장려	1등급	A : 소년소녀가장(시설퇴소아동 포함) B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배우자, 본인, 자녀), 입양청소년
		2등급	차상위계층(본인, 배우자, 자녀)
		3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재학기간 중 학부모 실직 학생</li><li>○ 재학기간 중 본인 또는 부모 장기입원(1개월 이상) 학생 및 자연재해 피해 학생</li><li>○ 소득분위 2분위 이하 학생 ※ 단.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li></ul>
		4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소득분위 3~5분위 이하 학생 ※ 단.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li></ul>
		한가족	한가족(형제, 자매, 부부, 부모와 자녀)이 동시에 본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가계가 곤란한 자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거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본인, 배우자, 자녀)인 재학생
		교수추천	가계가 곤란한 학생 중 기독교적 인성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학생으로 학부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학부별 교수추천장학금 지급세칙에 의함)
		부서추천	가계가 곤란한 학생 중 기독교적 인성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학생으로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 면학장려장학금(1등급)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금액 : (A급) 등록금 전액+기숙사 제공/(B급) 등록금의 50%
- 2) 면학장려장학금(2등급)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금액 : 150만원
- 3) 면학장려장학금(3등급)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금액 : 100만원
- 4) 면학장려장학금(4등급)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금액 : 80만원 이하
- 5) 한가족장학금
  - 선발기준 : 한가족(형제, 자매, 부부, 부모와 자녀)이 동시에 본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가계가 곤란한 자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금액 : 각 100만원
- 6) 교수추천장학금
  - 선발기준 : 가계가 곤란한 학생으로 기독교적 인성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학생으로 학부장, 주임교수, 지도(담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성적기준 : 학부별 교수추천장학금 지급세칙에 의함
  - 금액 : 50~300만원 이하
- 7) 부서추천장학금
  - 선발기준 : 가계가 곤란한 학생 중 기독교적 인성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학생으로 부서장 추천을 받은 자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 금액 : 1인당 100만원 이하

#### 아. CCG/성적향상장학금

- 1) 성적향상(A등급)
  - 선발기준 : 이전학기 평점 2.5 이하자 중에서 직전학기 평점 3.5 이상을 취득한 자
  - 금액 : 1인당 80만원(재학기간 중 1회 수혜)

### 2) 성적향상(B등급)

- 선발기준 : 이전학기 학사경고자(평점 1.5 미만)로서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 취득한 자

- 금 액 : 1인당 70만원(재학기간 중 1회 수혜)

### 3) 성적향상(C등급)

- 선발기준 : 이전학기 평점 3.5 이상자 중에서 직전학기 평점 0.5 이상 상향한 자

- 금 액 : 1인당 30만원(재학기간 중 1회 수혜)

### 자. CCG/해외교류장학금

1) 선발기준 : 해외 교류 관련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 선발된 자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인 자

3) 금 액 : 일정액



## ■ 교외장학금 안내

2017.12.현재

구 분	장학금명
교내기관	교수,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최갑종 교수, 정정미 교수, 허광재 교수, 백순화 교수, 박미영 교수, 신현호 교수, 최명민 교수, 김제영 교수
	남직원회, 여직원회, 총학생회, 졸업준비위원회, 경찰학부학생회, 백석대학교 총동창회, 특수교육과 남우회, 특수교육과 총동문회
	김승현장학(법행정경찰학부), 넬슨신장학(디자인영상학부)
	교내 복지업체
교내·외 교회	백석대학교회, 백석노회, 아산양문교회, 참아름다운교회, 주향한교회
시도·장학재단·사회단체	성혜장학회, 옥산장학회, 일산장학회, KT그룹희망나눔재단, 강남구청, 경기복지재단, 과천시애향장학회, 관자놀이, 괴산소방서, 노연문화재단, 논산소방서, 농어촌희망나눔재단,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삼송장학회, 서울장학재단, 서천소방서, 성동구청, 우덕재단, 포스코나눔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한아의료재단, 해성문화재단, 아산재단장학, 안산인재육성재단, 오성장학재단, 이스테파노장학회, 인천공단소방서, 정산장학재단, 제천소방서
외부 기업체·개인	누리마루하우스, 누리미디어, 현문사, 수문사, 디웍스코리아, 매실농원, 브라운스프링, 사과나무치과병원, 수지예인치과의원, 연세고운미소치과, 와이케이글로벌, 정담미디어, 유웨이어플라이, (주)다비치안경, (주)디지털대성, (주)무카스, (주)수성모터스, (주)풍전에프앤비, (주)알라딘 커뮤니케이션, 지니스, 코카콜라음료(주), YTN
	김동일, 박인걸, 박찬호, 배은숙, 송영인, 윤천균, 이경욱, 이상숙, 이윤희, 이주영, 제희원, 조태영

※ 상기 장학종류(금액)는 기탁자의 사정에 의하여 해당 학기(년) 중에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장학금의 출연자가 특정인 또는 특정 학부(과), 인원을 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연자 또는 기부자의 요구조건에 의함.
- 기타 미지정 교외장학금은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 ■ 국가장학금 안내

장학명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장학금액
국가1유형장학금	- 본교 재학생중 소득 분위 8분위 이하 자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한국장학재단 지급기준
국가2유형장학금	- 본교 재학생중 소득 분위 8분위 이하 자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학교자체 지급기준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 이공계열 학과 입학자중 수능우수자 및 고교내신 성적 우수자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87점 이상	4년간 등록금 전액
인문100년장학금	- 인문·사회계열 입학자중 수능우수자 및 고교내신 성적 우수자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87점 이상	4년간 등록금 전액
국가우수장학금 (예체능계)	- 예체능계열 학과 3학년 재학생 중 전공 관련 활동실적 우수자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87점 이상	2년간 등록금 전액
희망사다리장학금	- 3, 4학년 재학생 중 4주 이상 현장실습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중 현장실습을 이수한 중소기업과 고용계약 체결이 확정된 자 (수혜학기만큼 의무복무 필수)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기간 내 등록금 전액 및 취업준비금 200만원
국가근로장학금	- 본교 재학생중 소득 8분위 이하 자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시급 교내 9,000원 교외 11,150원

IV

대학생활



##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 1. 정의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 구내치료비  
학교 구내에서 학생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

### 2. 수혜자격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가능함

### 3. 신청절차

- 사고발생 즉시 신고 : 학생처 서면 또는 전화(550-9037)  
※ 사고발생 후 24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음
- 치료종결 후 제출 서류
  - ① 지급신청서 1부
  - ② 진료비계산서 1부
  - ③ 재학증명서 1부
  - ④ 학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⑤ 진단서 1부(진료비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보험회사 확인 후 학생통장으로 입금

### 4. 문의사항

- 학생처(학생복지관 1층, 550-9037)